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14 선고 2023나15965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4. 11. 14 선고 2023나1596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613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항소인피고의 소송수계인 채무자 B의 회생관리인 B의 소송수계인 B

변론 종결2024. 10. 24.

판결 선고2024. 11. 14.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6134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90,641,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11.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

다.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4,1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원고의 회생채무자 B에 대한 회생채권은 104,17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임을 확정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회생채권확정을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8행 중 "피고" 다음에 "(아래 마.항 기재와 같이 2023. 11. 21. 회생개시결정으로 피고 B의 회생관리인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가, 2024. 9. 10. 회생절차종결결정으로 다시 B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후를 불문하고 통칭하여 '피고'라고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10행 중 "청구의 소"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글상자 아래 1행 중 "57,261,326원"을 "54,476,446원"으로 고치고, 3쪽 3행 중 "F)" 다음에 ", 2024. 5. 10.경 24,405,263원(서울중앙지방법원 G)"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4행과 5행 사이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22. 6. 24. 이후인 2023. 10. 25.

회생절차개시신청(서울회생법원 2023회단100142호)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3. 11. 21.

회생절차개시결정을, 2024. 6. 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2024. 9.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3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종결결정을 각 하였다.

○ 제1심판결 3쪽 중 "[인정근거]"란에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2022. 2. 24.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잔존 판결금 104,171,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만약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에 따라 직접적인 이행을 구할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금 상당의 회생채권이 있다는 확정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성

가. 관련 법리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도중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되고(제59조 제1항),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어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된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면 그 기재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제166조 제1호, 제168조), 계속 중이던 소송은 부적법하게 되고,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의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계속 중이던 소송을 수계하고(제172조 제1항), 청구취지 등을 채권확정소송으로 변경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5050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회생계획에서 정한 대로 채무를 변제하는 등 회생계획을 계속하여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의 계속 중에 회생절차종결결정이 있는 경우 그 회생채권 등의 확정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회생채권 등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취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에 회생채권 등의 확정소송을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가 확정되면 소송의 결과를 회생채권자표 등에 기재하여(제175조), 미확정 회생채권 등에 대한 회생계획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다84417, 84424, 84431 판결 등 참조).

나. 직권 판단

살피건대, 회생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회생채권자표를 집행권원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와 별도로 이행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중복하여 취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만일 회생채권에 대하여 즉시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 선고가 가능할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 회생계획에 미확정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는 지급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회생채권자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변제할 채무액이 '미정'으로 기재된 회생채권자표와 그 변제할 금액을 확정판결이 결합되어 집행권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던 2023. 11. 21.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앞서 살핀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구하는 연대보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회생채권 전액을 즉시 이행하라고 청구하는 금전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가 2022.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C로부터 2022. 2. 9. 12,966,452원, 2022. 5. 23. 54,476,446원¹⁾을 변제받고, C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2022. 8. 26. 487,620,023원, 2022. 11. 18. 9,048,959원, 2023. 1. 27. 48,627,954원, 2024. 5. 10. 24,405,263원을, 2023. 10. 4. C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152,337,999원을 각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C로부터 지급받거나 추심한 위 돈이 이 사건 판결금의

채무원리금에 미치지 못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위 돈을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라 변제충당하면,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무 원리금은 90,641,970원이 남게 된다(구체적인 충당내역은 별지 충당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잔존 연대보증채무는 90,641,9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의 최후 변제일 다음 날인 2024.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판결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된다.2)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쪽 3행 중 "이 사건"을 "① 이 사건"으로, 5행 중 "그렇지"를 "② 그렇지"로, 7행 중 "보증인"을 "③ 보증인"으로, 8행 중 "해당한다고"를 다음과 같이 각 고친다.

해당한다. ④ 만일 무효가 아니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이 C에 대한 가압류 등을 취하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또는 C가 경영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착오에 빠진 피고에게서 이 사건 변제확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피고의 위 변제확인서 작성, 교부행위를 취소한다. 또한 ⑤ C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과 상계한다.3)

○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각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경매, 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이 사건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 착오에 빠진 피고에게서 이 사건 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변제확인서 작성 전 원고의 의뢰를 받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변제확인서와 가압류 해지는 별개이며, 피고가 담보를 제공해야만 가압류 해지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을 제1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담보를 설정하려 하였으나, 원고 측에서 담보 설정을 회피하면서 압류 해제를 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5쪽 8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C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4)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종오

판사장현석

판사이주일

별지

1) 원고가 제출한 2023. 8. 7. 자 준비서면 및 갑 제4호증의2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2023. 10. 10. 자 준비서면 및 2023. 10. 18. 자 참고서면에 C로부터 2022. 5. 23. 변제받은 금액으로 기재된 각 "57,261,326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 회생채권확정의 소는 회생채권자가 신고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을 정하여 권리를 확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로서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아니므로,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으나(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327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이 사건 판결로 확정된 '714,772,502원

및 이에 대한 2021. 3. 19.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무' 자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최후 변제일 다음 날부터 연 12%의 비율을 적용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원고가 C에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였는바, C의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433조 제1항), 피고의 위 주장을 이와 같은 상계항변으로 선해한다.

4)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원고가 C에 구하였던 금원은 '원고가 2019. 8. 12.부터 2021. 1. 25.까지 사이에 C의 주문에 따라 납품한 주방가구(도어) 등의 건축자재 대금'이고, C가 주장한 하자는 '원고가 H 공사현장 및 I 공사현장에 납품한 건축자재의 하자'이나, 을 제4호증에 기재된 '공사명'은 '대전 유성 J 아파트'이고, '하자처리 기간'은 '2023. 5. 22. ~ 5. 29.'이다.